

(재)부산문화회관 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

(재)부산문화회관에서 근무할 단시간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.

2018년 01월 17일

(재)부산문화회관 대표이사

□ 채용직급 및 분야

채용분야	직 급	채용인원	계 약 기 간	직 무 내 용
전시·교육 업무보조	단시간 근로자	1명	2018.2.1. ~2018.7.31. (6개월)	· 아카데미 운영 및 기획전시 사무 보조
문화사업 업무 보조	"	1명	"	· 시민회관본부 문화사업분야 업무 보조

※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(채용시험의 가점 등)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하여 가점 부여(5~10%)

※ 근무처 : 부산문화회관 ▷ 전시·교육 업무보조, 회계 및 채용업무 보조 분야
부산시민회관 ▷ 문화사업 업무 보조 분야

□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

구 분	지원자격
전시·교육 업무보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성실하고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
문화사업 업무 보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응시자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-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- 인사규정 제10조(결격사유)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※ 보수수준 : 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수준, 별도 수당 없음

□ 근무조건

- 근무시간 : 주 5일 38시간 (월~목 09:00~18:00, 금 09:00~16:00)
- 4대보험 가입, 주휴수당 발생, 월 만근 시 1일 휴가 발생

□ 전형일정 및 방법

○ 총괄

공고기간	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일시	전형장소	합격자발표
2018.1.17. ~ 1.28. (12일간)	2018.1.17. ~ 1.28. (16:00마감) (12일간)	서류심사	2018.1.29.	부산문화회관	2018.1.29. 17:00
		면접시험	2018.1.30.	부산문화회관	2018.1.31. 17:00

※ 서류접수 마감시간: 2018.1.28. 16:00까지이며, 이후 시간은 접수하지 않음

※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전형 일정 : 응시자 개별 알림

○ 채용방법 : 1차 서류전형 + 2차 면접전형

- 서류전형 : 응시자의 경력·경험 등 서면심사
- 면접전형 : 적격여부 심의

○ 채점 지표 구성

- 서류전형

구분	경력 및 경험	자격	자기소개
배점	40	20	40

- 면접전형 : 적격·부적격 여부 결정

□ 원서접수

○ 접수처 및 접수방법 : 전자우편(e-mail) 접수

- (재)부산문화회관 전자우편(bsculture@bscc.or.kr)으로 서류 제출

○ 제출서류 : 이력서 1부<별지 제1호>

※ 증명서는 면접전형 당일 제출(졸업증명서, 경력 및 재직증명서 등)

※ 최종합격자는 졸업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공무원용 채용신체검사 결과 각 1통 원본 제출

□ 기타사항

- 합격자 통지 후에도 제출된 서류의 주요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당회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, 응시자의 학력, 성별, 연령 등의 차별적 요소를 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할 경우 탈락될 수 있으니 이 점 숙지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- 최종합격자 미선발 시 후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 문의사항은 (재)부산문화회관(☎607-6024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법정 채용 가산점

☐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따라 가점부여

부여대상	부여기준 (각전형별)	비고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 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 공로자, 공상 공무원, 특별공로 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배우자 3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 순직자의 자녀	10%	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
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2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 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	5%	
1.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2.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	10%	독립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제16조
1. 애국지사의 가족 2.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3.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인	5%	
1.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 2. 재해사망 군경 및 재해사망 공무원의 배우자	10%	보훈보상 대상자지원에 관한법률 제33조
1.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	5%	
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본인	10%	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제7조
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가족	5%	
1.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본인 2. 5·18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	10%	5.18민주유공 자예우에관한 법률 제20조
1.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가족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2.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3.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및 자녀가 없이 사망한 5·18민주유공자의 제매(弟妹)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	5%	
1. 특수임무 사망자의 유족 및 행방불명자의 가족 2.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	10%	
1.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 의 가족 2. 특수임무 부상자 및 특수임무 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3.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(弟妹) 중 1인에 대하여는 그를 지정하는 부모 모두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취업지원	5%	특수임무수행자 지원및단체 설립에관한 법률 제19조